

행복한 회사, 행복한 사회

조문술 차장 / 해럴드경제신문 산업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회사들이 CEO들의 잇단 구속과 공판, 처벌로 뒤숭숭하다. 또 누가 이런저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지 속덕공론도 들려온다. 총체적 리더십 위기다.

게다가 불황에 따른 산업계의 인적·물적 구조조정은 아직 진행형이다. 불황의 끝이 보일 듯 말듯 하나 기업들은 아직 방향타가 없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아재하처(我在何處)의 지경이다. 한마디로 산업계 전체에 우울이 짙게 드리워졌다 할 것이다.

이런 순간 새삼 생각해보게 된다. 주주, 직원,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행복하게 하는 회사는 없을까?

기업시민이라는 이름에 따라 사회적책임(CSR) 활동으로 기업이 이미 정부영역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 마당이다. 하지만 이런 새삼스런 질문에 답이 될 만한 회사는 마땅히 없는 것도 사실이다. 주주와 함께 내부고객이라는 직원 행복에 충실한 기업은 적지 않아도, 그것이 사회로 확대된 예는 찾기 어렵다. 기업이 사회와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보살펴야 할 대상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기업이란 본질적으로 이윤을 쫓아 움직이고, 효율적 이윤추구 수단의 하나로 만족이니 행복이니 하는 흥내를 낸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바탕으로 지속성을 추구하는 법인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또한 주주, 직원, 고객, 지역사회 4자간 이익은 상충하는 때가 대부분이거니와 설사 일치한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이상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행복한 회사=행복한 사회'란 명제는 한 글자 뒤집기에 불과하지 만 사실상 성립 불가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행복한 회사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렵다. 다양한 구성원의 천변만화하는 욕망과 견해를 제어하고 조율하는 힘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쉽지 않은 탓이다.

우량한 기업, 행복한 회사를 탄생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느닷없이 이런 객쩍은 소리를 꺼낸 것은 시절이 하수상해서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운운 귀 따갑더니 개념의 범위가 좀 더 넓은 경제민주화로 논란이 옮겨갔다. 관련 법률도 상생법, 유통법, 공정거래법 등 하위 실정법에서 헌법으로 격상됐다. 지난해의 논란을 거쳐 마련된 이런 법률 규정들이 시행규칙과 같은 구체성을 띠고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잇따른 헌법적 쟁송은 예고돼 있다. 더구나 개념적, 포괄적 규정이 대부분인 헌법 해석상 논란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경제공동체 형식을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라고 합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량한 기업, 행복한 회사를 탄생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논의가 생략된 채 분배가 먼저니 성장이 먼저니 하는 순환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양극화란 잘못된 정책의 결과이지 기업의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그동안 동반성장의 효율적인 주장을 위해 생소한 생태이론까지 끌어들이기도 했다. 산업생태계니 경제생태계니 하는 용어들이 그것이다. 경제활동 참여자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을 강화를 개념의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부의 편중을 심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우리가 기대했던 적절한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양극화가 지나쳐 공동체의 구성원 간 분열과 대립까지 불러오고 있는 중이다. 길거리로 나왔을 위기의 서민, 소상공인이 대형 자본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상황이 이렇진대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시 옳은 것 또는 선한 것에 대한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방안을 찾는데 진력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민주화 바람도 그 연장 선 위에 있다. 이는 헌법 119조 1, 2항의 규정을 넘어서는 문제다.

마이클 샌델 식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사회란 효율적인 것 보다는 선한 것을 추구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명제적 참과 거짓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옳은 것과 선한 것 사이의 긴장, 이른바 '사회적 정의'라는 게 있다.

이 두 가치가 반드시 대립되지는 않지만 이따금 하나를 꼽아야 하는 가혹한 선택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렸다.

경제적 자유를 강화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 강화와 제한의 대상은 어느 계층이 될 것인지와 같은 것 말이다. 다소 구체성을 요하는 문제들이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공존토록 해야 하는 과제로 주어졌다.

극히 단순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현상을 바라보자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없는 시험은 이미 시작됐으며, 그 선택은 80·90년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경도됐던 것과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실패는 확률현상이며, 확률은 29분의 1, 300분의 1과 같이 이미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돼 있다(하인리히의 법칙)는 점을 상기해보라.

분명,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은 이처럼 위선(偽善)과 모순투성이인 경우가 적지 않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장치들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단든지, 기업의 건강성을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작업들이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이처럼 문제(현상)는 추상화된 채 어렵고도 모호한 상태로 진행된다. 선택도 그래서 어렵다. 또한 답도 없다.

그런데 이런 외중에도 분명한 것은 보인다. '자원의 효율적 분배'라는 것 정도다. 무엇이 보다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은 또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한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상의 해석도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본다면 보다 쉬울 수가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현상을 바라보자.

우선 주주, 직원, 고객이 함께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데 진력하고, 그 결과를 사회로 확장하면 된다. 한 기업이 만든 재화와 용역이 주주와 직원을 풍요롭게 하고 고객도 행복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 이를 재화와 용역의 가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된다고 할 것이다. 굳이 파레토 최적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